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659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6592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816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이선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임창혁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816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등기소 2021. 12. 7. 접수 제1018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② 원고의 대표이사 C과 피고의 대화 내용,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한 사정, ④ 중도금 지급기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바로 다음날로 정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피고 주장 합의'라고 한다)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주장 합의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주장의 사정들은 오히려 원고가 피고 주장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진

판사박미리

판사안동철

별지